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75 발의연월일: 2024. 10. 24.

발 의 자 : 엄태영 • 이종배 • 유상범

조지연 • 고동진 • 정동만

박형수・김정재・조 국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등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	세액감면) ①
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 중 <u>2024년 12월 31</u>	<u>2026년 12월 31</u>
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u>일</u>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	
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	
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	
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	
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	
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	
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	
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 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한다.

1. • 2.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법 시2조제1항에 따른 벤 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 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 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 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 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 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 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 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 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

1. • 2. (현행과 같음)
②
<u>202</u>
6년 12월 31일

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 ③ (생략)
-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 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 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 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 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 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 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 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0001 100 210
<u>026년 12월 31일</u>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 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 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 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 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 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 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 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 중소기업 및 2024년 12월 31일 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 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 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 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

·.
⑤
<u>2026년 12월 31일</u>
<u>2026년 12월 31일</u>
<u>2026년 12월 31일</u>

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 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 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 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 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 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 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 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하 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 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2. (생 략)

6
<u>2026년 12월 31일</u>
1.・2. (현행과 같음)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